형사정책연구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제23권 제2호(통권 제90호, 2012 · 여름호)

가족접견제도의 개별화 :
가족만남의 집을 중심으로

김 병 수*

국 | 문 | 요 | 약

가족접견제도는 배우자와 자녀 등과 같이 인생에서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유대를 강화시킬 수 있고 이들과의 관계를 유지하여 가족관계를 안정시킬 수 있어 수형자가 사회복귀를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그러나 보안상의 위험, 비용증대 그리고 가족접견장소를 통한 마약, 흉기 등과 같은 반입금지물품의 유입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특히 가족간의 문제가 있었던 수형자들에게는 이러한 접견제도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수형자가 입소 전에 배우자와 좋지 못한 관계였을 경우에는 교도소 내에서의 접촉이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처럼 대상자를 구체적인 가족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선정하는 것은 현대교정이 요구하는 개별처우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수형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개별화된 가족접견제도를 모색하여야 한다. 가족접견제도를 개별화하기 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형자와 그의 가족, 친밀한 배우자, 친밀하지 않은 배우자, 자녀들, 그리고 그 외의 다른 가족들에게는 접견의 종류, 방법 등이 각각 다르게 개별적인 접근을 하여야 한다. 수형자,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이 받는 악영향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형자의 성별에 따른 가족접견제도를 검토하여야 한다. 수형자가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에 따라 자녀들과의 가족접견에서 오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가족접견의 대상자로서 치료감호대상자, 과거 가정폭력범죄자, 성병 등 전염성 질환자를 제외 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족접견의 장점을 살려 법정 가족은 아니지만 수형자에게 법정가족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 있는 사실혼 배우자나 동거자에게도 가족접견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 주제어 : 가족접견, 가족접견제도, 부부접견제도, 가족접견의 개별화, 개별처우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전임연구원, 법학박사.

I. 서론

1. 문제의 제기

수형자의 자유를 박탈하고 수형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형벌집행의 대상으로서만 보던 응보주의적 형벌관에서 벗어나,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해서는 형벌의 목적을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두고 수형자를 교육・개선하는 특별예방주의적 형벌관이 등장하게 되면서 범죄자의 사회복귀 즉 재사회화가 교정처우의 중요한 목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제55조에서도 "수형자에 대하여는 교육・교화 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교정교화를 도모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처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교정의 목적이 재사회화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수형자를 사회에 복귀시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공동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관계의 유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수형생활은 가족들로부터 수형자를 격리하여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만들며 결국에는 가족과 단절을 초래하게도 한다. 이는 가족의 해체가 급격하게 되는 원인이 되며, 이로 인해 수형자가 사회로 복귀할 근원적인 거처가 상실될 수도 있다. 또한 가족이 수형생활을 하고 있을 때 나머지 가족들은 심리적 충격・경제적 곤란・양육의 문제 등의 어려움에 더해 범죄자 가족이라는 사회적 편견으로 이중고를 겪게 된다. 특히 어린 자녀들은 수치심, 사회적 낙인, 부모의 부재 등으로 비행청소년으로 성장하기 쉬운 양육환경에 방치되므로 범죄가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그래서 수형자가 가족들과 안정된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방시설・거실 등이 마련된 별도의 가옥이나 접견시설에서 부부를 포함한 자녀 등 전가족이 함께 숙식을 같이 할 수 있게 하는 가족접견제도[1]를 실시하고 있다. 이 가족접견제도는 배우자와 자녀 등과 같이 인생에서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유대를 강화시킬 수 있고 이들과의 관계를 유지하여 가족관계를 안정시킬 수 있어 수형자가 사회복귀를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 있다. 그러나 보안상의 위험, 비용증대 그리고

1) 이윤호, 「교정학」, 박영사, 2007, 277면.

가족접견장소를 통한 마약, 흉기 등과 같은 반입금지물품의 유입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특히 가족간의 문제가 있었던 수형자들에게는 이러한 접견제도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수형자가 입소 전에 배우자와 좋지 못한 관계였을 경우에는 교도소 내에서의 접촉이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2] 이러한 가족접견제도의 부정적인 측면들은 수형자와 그 가족 등의 특성에 맞도록 가족접견제도가 운영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수형자와 그 가족 등의 특성에 맞도록 개별화하는 가족접견제도의 개별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것은 현대 교정이 추구하는 처우의 개별화사상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2. 연구방법

본 논문이 가족접견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리면서도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선방안으로서 수형자와 가족들의 특성에 맞는 개별화된 가족접견제도를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먼저 가족접견제도에 관한 기존의 국내문헌이 많지 않아 외국에서 발표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보았다. 이것을 통해 가족접견제도의 의의(Ⅱ), 가족접견제도의 장단점과 현행 가족접견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가족접견제도로서 '가족만남의 집'과 '가족만남의 날'이 있는데 이들 중 '가족만남의 집'보다 가족간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가족만남의 집'을 중심으로 그 문제점을 다루었다. 가족접견제도에 관한 실태조사는 법무부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자료를 검토하였다(Ⅲ).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가족접견제도를 수형자의 성별, 배우자, 자녀 등으로 나눠 개별화하자는 주장과 함께 수형자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개별화된 가족접견제도를 모색하였다(Ⅳ).

2) N. G. Vigne, R. L. Naser, L. E. Brooks, and J. L. Castro(2005), "Examining the Effect of Incarceration and In-Prison Family Contact on Prisoners' Family Relationships", Journal of Contemporary Criminal Justice 21(4): 314-335.

II. 가족접견제도의 의의

1. 가족접견제도의 개념

현대 행형은 수형자에 대한 단순한 격리 · 구금에서 벗어나 수형자의 교화 · 개선을 통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세계 각국의 교정은 시설내처우로 나타나는 악풍감염, 석방 후 사회적응의 곤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설내 생활조건을 가능한 한 일반인의 생활조건과 유사하게 하여 자유박탈에 따른 유해한 결과들을 최소할 것이 요구하고 있다.[3] 우리나라도 수형자의 교화 · 개선을 통한 사회복귀를 행형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여 보다 적극적인 처우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 예로 수용자에게 주말에 가정을 방문하여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장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외출 · 외박제도, 모범수형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교정시설 밖으로 나가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귀휴제도, 교정시설 구외부지 집에서 가족과 숙식을 함께 하며 지낼 수 있는 '가족만남의 집'제도, 원거리에서 거주하는 가족의 접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교정시설의 전용정보망을 이용한 원격화상접견제도 등 여러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4]

이러한 취지에서 마련된 가족접견제도를 단순히 부부접견제도를 확대한 것[5]이라고만 정의하기 보다는 "주방시설 · 거실 등이 마련된 별도의 가옥이나 접견시설에서 부부를 포함한 자녀 등 전가족이 함께 숙식을 같이 할 수 있게 하는 접견제도"[6]라는 정의와 같이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관련하여 가족접견제도란 "배우자와 자녀 등의 가족들과 교도소내 또는 교도소밖의 특정지역에 별도의 접견시설을 마련하여 수일 또는 상당한 시간 동안 가족

3) 정진수 · 박양빈 · 이윤호 · 임재표 · 김종정 · 홍남식 · 이종택, 「21세기 교정비전과 처우의 선진화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03-16), 781면.

4) 조병인 · 원혜욱 · 민수홍 · 이경재, 「수용자 외부교통 확대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45면.

5) 박영규, "수형자의 외부교통권", 교정연구(제28호), 2005, 88면; 허주욱, 「교정보호학」, 박영사, 2010, 789면; 조병인 외, 앞의 책, 48-49면.

6) 이윤호, 앞의 책, 277면.

간에 숙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접견제도”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2. 부부접견제도에서 시작

가족접견제도는 부부접견제도(Conjugal Visiting System)[7]를 확대한 것이다. 1918년 미국 미시시피 주립교도소에서 부부접견 프로그램을 처음 창안되었다. 그 당시 보안관인 James Parchman은 주간에 흑인 수형자들이 목화농장에서 열심히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부부접견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부부접견 프로그램이 수형자에게 원활한 수형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었으며,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교정의 사회화에도 획기적인 업적이 되었다. 미국에서 시작되어 남미제국의 엘살바도르, 멕시코,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에서 부부접견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8] 교정의 사회화처우제도로서 우리나라는 1999년 6월에 처음 도입하여 ‘부부만남의 집’이라고 명명하였던 것을 현재 ‘가족만남의 집’이라는 가족접견제도(Family Visits)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가. 부부접견제도의 장점

1) 교도소내의 성적 긴장감 완화

매슬로우(Maslow) 5대 욕구[9] 중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생리적 욕구로 식욕, 성욕, 수면욕 3대 욕구를 갖고 있는데 이 중 수형자는 수형생활의 제한적 자유박탈로 인해 성욕의 경직성을 해결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이성과의 접촉이 금지된 교도소 내에서는, 수형자의 성 생활권이 박탈되게 되면 수형자는 다른 것으로

7) 수형자의 성생활을 인정하고 있는 제도로서 교도소 내의 특정지역에 별도의 접견시설을 마련하여 부부간에 숙식을 같이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 부부간의 애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접견의 한 방법이다. 이윤호, 앞의 책, 277면.

8) 허주욱, 앞의 책, 789면.

9) 5대 욕구로는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Needs), 안전의 욕구(Safety Needs), 소속과 사랑의 욕구(Belonging and love Needs), 존중의 욕구(Esteem Needs), 자아실현욕구(Self-actualization Needs)가 있다. A. H. Maslow,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50, 1943, pp.370-396.

보상받으려고 그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교도소내의 동성애[10] 그리고 동료수형자를 강간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남자 교도소 내에서 발생하는 강간은 수형자와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사회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정신적・육체적 결과를 초래한다. 교도소에서 강간당한 수형자들은 종종 심각한 정신적 장애를 경험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수형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파괴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1969년 Parchman이 수행한 부부접견제도에 관한 최초의 연구로 유명한 Sex in Prison 이후로, 부부접견제도는 교도소에서 동성애와 폭력을 줄이고 가족의 안정성을 증진시킨다고 주장하였다.[11]

2) 사회적응 및 수용관리의 도모

외부와 단절되어 있고 자유가 제한된 수형자는 재사회화 교정목적과는 반대방향인 재사회화의 이탈현상을 낳게 되는데, 이러한 사회이탈 현상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수형자에게 외부와 어떤 형태로든 접촉할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외부와의 교통은 수형자로 하여금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본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구금 이전에 접촉하였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여 출소 후에 원활한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부부접견제도는 이러한 근본 취지하에 특별 수용자인 기혼자의 배우자와의 접견의 기회를 줌으로써 성문제나 성적 박탈감을 해소함은 물론, 구금생활로 인해 단절되고 소원해진 부부관계를 정상적으로 복원하고, 특히 장기 수형자를 심리적으로 안정시켜 수형생활에 적응력을 높이고 출소 후의 사회적 응용력도 높여주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보다 적극적인 교화수단(adjustment)으로서 석방후 재범율을 낮출 수 있다고 한다. 즉 주기적인 부부접견을 하는 피구금자는 그렇지 못한 수형자에 비해 석방 후 부부와의 유대관계가 좋고, 안정된 생활로 재범률이 낮다고 주장한다.[12]

---

10) 일본에서는 교도소내의 동성애를 감소시키기 있는 것으로 부부면회제도를 들고 있다. 藤本哲也, 現代アメリカ犯罪學辭典, 勁草書房, 1991, 269면.

11) C. Hopper, *Sex in Prison*, Baton Rouge; Louisians State University Press, 1969.

12) Burstein, J., Conjugal Visits in prison, Toronto 1977, S. 91ff.

나. 부부접견제도의 비판점

1) 폭력의 위험

부부접견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오히려 조용하던 교도소를 성적 긴장감이 고조되게 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그 결과 부부접견제도가 서구 유럽에서는 비교적 활성화되었으나, 미국에서는 그 역사는 짧지 않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는 제도이다.[13] 또한 1969년 Parchman이 수행한 연구(Sex in Prison)에서 이 프로그램이 가족의 안정성을 증진시키고 교도소에서 동성애와 폭력을 줄인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부부접견제도가 가족의 안정성을 증진했다거나 교도소 내에서의 동성애와 폭력을 줄였다는 실제적인 연구는 많지가 않다고 반박하는 견해들이 있다.[14]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부부접견이 가족간의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용하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부부접견제도가 수감된 가족이 있는 가정에서 종종 나타나는 기능장애가정(dysfunctional family)의 필요에 충족하기 보다는 이미 정상적 가정(already functional families)을 유지하는데 상대적으로 더 유리할 수는 있다는 사실만 밝혀졌다고 한다. 특히 부부접견제도와 교도소내 폭력범죄의 연관성에 관해서는 단 두 개의 논문들만이 있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 논문들에서는 부부접견제도에 참가하지 않은 수형자들과 비교하여 부부접견에 참가한 수형자들이 동료 수형자들에 대한 폭력범죄를 덜 범했다는 것을 발견하여 부부접견제도가 교도소내 폭력을 줄인다고 주장하였나 불행하게도 이 논문들은 폭력의 위협과 실제적인 폭력을 합쳐서 측정한 오류를 범하였다는 것이다. 현재의 연구들은 교도소 폭력을 나타내는 방법으로서 폭력의 위협과 실제적인 폭력을 다른 기준으로 측정한다. 따라서 교도소 폭력을 폭력의 위협과 실제적인 폭력으로 나눌 때에는 부부접견제도가 교도소 폭력행위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15]

---

13) 이윤호, 앞의 책, 277면.

14) C. Hensly, S. Rutland, & P. Gray-Ray, “The effects of conjugal visits on Mississipi inmates”, Corrections Compendium, 25(4), 2000, p 1-3. p 21-22.; C. Hensly, S. Rutland, P. Gray-Ray, & L. Durant, “Conjugal Visitations on Mississipi”, The Researcher, 16(4), 2000, p 1-15.

15) Christopher Hensly, Mary Koscheski, and Richard Tewksbury, “Does participation in conjugal visitations reduce prison violence in Mississipi? An Exploratory Study”, Criminal Justice

또한 부부접견제도가 부부간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계호의 수준을 낮출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가정폭력적인 상대방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교도소 내의 일반적인 계호수준의 감시를 부부접견에 적용한다면 비정상적인 관계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부부접견은 부부일방의 폭력을 통제할 수 없다는 특성 때문에 가족간의 건강한 유대관계를 증진하기보다는 오히려 실제로 몇몇 사례에서처럼 가족 구성원의 물리적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부부접견 중에 가정폭력사건이 발생한 기록이 많지는 않지만, 가정폭력의 남성가해자는 부부접견 동안 심각한 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는 항상 존재한다.

2) 성병 전염의 위험

미국 교도소내의 HIV나 AIDS 감염율이 교도소 밖에 보다 2배나 높다[16]는 사실처럼 확실히 부부접견은 교도소 안과 밖으로 성병이 전염될 수 있는 위험을 높인다. 교도관들의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콘돔과 같은 그 밖의 수단들을 통해서 안전한 성관계로 유도할 수는 있으나 이것은 성관계의 은밀하고 다양한 가능성에 비한다면 성병감염의 위험을 전부 통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부부접견이 성병에 감염이 된지도 모르는 수형자들과 그 배우자들의 성적 관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감염된 것으로 알려진 수형자들을 위해서 부부접견제도를 허용하여야 하는지 도덕적 ·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여야만 한다. 수형자가 감염된 사실을 배우자에게 알리는 문제뿐만 아니라 감염된 수형자와 그 사실을 알고도 부부접견을 원하는 배우자의 문제도 고려하여야 한다.

3) 비용증대의 문제

실질적으로 부부접견에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교도소와 구분된 장소에서 별도의 시설을 마련하고 도주 등의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하여 경비인력을 배치하는

Review Vol. 27, No.1, 2002, p 61.

16) Maruschak, Laura M. December 2009, Bulletin: HIV in Prisons, 2007-2008. Washington, D.C.,: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Retrieved from: https://www.aca.org/government/population.asp.

등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부접견은 부부관계의 은밀성으로 인해 통제될 수 없는 가정폭력의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필수적인 안전예방조치들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부부접견제도가 고비용의 프로그램임을 확인하게 한다. 부부접견은 사적인 접견으로 품위가 있고 그러나 안전한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충분한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게 하는데, 이 역시 행형비용이 증가되는 문제를 야기한다. 부부접견을 도입하는데 반대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논의들 중의 하나는 납세자들의 비용으로 유죄확정된 중범자들에게 초과된 특권을 부여하는 문제들을 일반인들이 공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부부접견제도가 가족관계를 보다 증진시킨다는 이유로 채택되지만, 교도소, 수형자의 가족들 그리고 사회에 재정적 비용을 떠맡기게 되어 실제로는 부부접견제도의 유익이 비용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한다.[17] 또한 성병이 전염된 수형자들의 치료비용은 고스란히 교도소와 납세자들인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 여성수형자들이 부부접견으로 임신하게 된다면 교도소는 그녀의 임신기간 동안 모성보호에 의료보호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부부접견으로 임신한 수형자의 아기를 출산하게 될 경우에 그 아이를 양육하여야 하는 비용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

4) 차별의 문제

부부접견제도가 기혼 재소자에게만 허용 가능한 제도라는 점에서 미혼재소자에 대하여는 차별이라는 비판이 따르기도 한다. 대부분의 부부접견 프로그램이 법적으로 결혼한 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내에서는 결혼가정 못지않게 비결혼가정에 대하여도 공평한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반해, 교도소 내의 부부접견제도는 비결혼가정에 대한 지원들을 인정하지 않아 교정행정에 차별을 야기한다. 그리고 부부접견제도가 단지 이성 커플사이에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동성애자나 성전환자 등과 같은 성적 소수자들에게는 역시 차별이 될 수 있다.

17) Wilkinson, Reginald A. “The Cost of Conjugal Visitation Outweighs the Benefits”, Corrections Today; Jun2003, Vol. 65 Issue 3., p19.

5) 도덕적 딜레마

부부접견은 또한 도덕적 딜레마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는 임신의 가능성을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수감된 배우자는 일반적으로 재정적 그리고 감정적인 지원을 배우자와 출산, 그리고 태어난 아기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것은 또 다른 수형생활의 스트레스를 제공하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부부접견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수감된 부모로부터 중요한 정서적 유대관계가 단절될 수 있다.

다. 가족접견제도로의 확대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가족접견제도가 제시되었다. 가족접견제도는 부부접견제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데, 부부접견제도에 비해 더 포괄적인 기능을 갖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가족접견제도에는 가족만남의 날과 가족만남의 집 등이 있다.

1) 가족만남의 집

1999년부터 장기형의 모범수형자 또는 가족과 만남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교도소 인근에 일반 가정집과 같은 구조와 시설의 '가족만남의 집'을 설치하고 수형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등의 가족과 함께 1박2일 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18] 가족만남의 집 운영에 대한 수형자 및 가족의 만족도와 교정교화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법무부는 자체예산과 복권기금 등을 활용하여 2008년까지 40개 교정기관에 41세대 가족만남의 집을 설치를 완료하였고, 교정기관의 신설 및 이전 건축 시 가족만남의 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19]

18) 수용자의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예규 제946호) 제13,14조.
19) 법무부, 2011법무연감, 2011, 242면.

2) 가족만남의 날 행사

199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족만남의 날 행사는 수형자가 가족과의 유대강화를 통하여 수형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장래를 설계하는 등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수형자 합동접견이라고도 한다. 이는 교정시설 내 정원이나 휴게공간과 같은 특별한 구역에서 주로 모범 수형자들과 그들의 가족 및 친지 등이 교도관의 감시와 방해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식사하고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입한 것으로 일반접견보다는 더 자유롭고 더 오랜 시간 동안 접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형자들에게 호응이 좋다. 가족만남의 날의 시행 시기는 설날, 어버이날, 중추절 등 수형자들의 심적 안정을 도모하고 교화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간에 자체 계획에 의해 시행하고 있다. 가족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가족은 수형자의 친족 중에서 5명 이내로 정한다. 다만, 무연고 수형자는 자매결연자 등 후원자 중에서 허가할 수 있다. 그리고 행사장의 질서유지 및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접견 가족의 수를 증감할 수 있다. 교정시설 외부에서 반입되는 음용수와 주류를 제외하고 가족이 준비한 음식물을 함께 취식하고 있다.[20]

III. 가족접견제도의 장단점

1. 장점

가족접견은 부부접견제도에 비해 더 포괄적인 기능을 갖는 제도이다. 부부접견을 가족접견으로 확대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이익들은 다음과 같다.

가. 배우자에서 가족으로 확대

가족접견제도는 사실상 부부접견제도를 가족구성원으로까지 확대한 것으로서,

20) 박영숙, “수형자의 가족관계강화를 위한 교정복지 방안”, 인권복지연구 제2호, 2007, 4면.

배우자로부터만 얻을 수 있었던 정서적 지지, 온정, 접촉과 격려를 가족으로부터도 얻을 수 있어 구금생활에서의 긴장과 고통을 일부 완화시킬 수 있으며 수형생활의 적응을 돕는다.[21] 그 동안에 전화나 서신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을 해결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가족과의 직접 접촉으로 유대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다. 교정시설에서 장시간 접견은 부부관계나 가족관계를 강화한다고 하고 있다.[22] 장시간 가족접견에 대한 효과에 대해 연구한 결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으로 수감생활의 안정과 가족과의 관계회복에 67.8%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23]

외견상으로는 부부접견의 확대가 가족접견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의도하는 목적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부부접견이 부부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반면, 가족접견은 오히려 어머니와 자녀간의 문제와 관계를 더 강조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부부접견이 부부간의 성적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수형생활중인 어머니와 자녀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족접견은 여성범죄자의 수용과 교정에 있어서 가장 큰 특수문제인 자녀를 결부시킨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처럼 가족접견은 자녀들과의 의사소통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남편 혹은 아내가 수감생활을 할 경우 아이는 상대적으로 볼 기회가 없어 부모와의 애착을 형성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나. 차별의 시정

부부접견은 단지 기혼 수형자에게만 허용 가능한 제도라는 점에서 미혼 수형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가족접견은 미혼자에게도 실시할 수 있어 혜택의 대상과 폭을 넓힐 수 있다.[24] 이러한 사항은 2004년 가족만남의 집을 이용한

21) Wright, E.M., Salisbury, E.j., and P.V. Voorhis, (2008), “Predicting the Prison Misconducts of Women Offenders”, Journal of Contemporary Criminal Justice 23(4), 317.

22) Neibeker, B., Strafvollzug und institutionelle Garantie von Ehe und Familie, in: zfStrVo 1984, S. 335-336ff.

23) Buchert, M. & Metternich, J. & Huser, S., Die Auswirkungen von Langzeitbesuchen und ihre Konsequenzen für die Wiedereingleiderung von Strafgefangenen in: ZfStrVo 1995, S. 259ff.

24) 이윤호, 앞의 책, 333면.

수형자들의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나는데, 가족만남의 집을 실제로 이용한 가족은 수형자의 배우자보다 수형자의 어머니가 가장 많았다는 점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조사대상 남자수형자의 절반이상이 미혼 혹은 미혼의 상태에서 동거했던 점을 고려해 보면 배우자보다 부모형제와의 접견이 더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25)]

그리고 가족접견제도는 다른 처우와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도 장점을 가진다. 가족접견제도는 귀휴를 보낼 수 없는 살인범과 같은 흉악범이나 성범죄자에게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교정처우가 어려운 수형자들에게도 가족접견제도는 가능한 제도라는 점에서도 장점이 있다.

다. 폭력의 위험에 대한 감소

부부접견이 배우자 간의 단 둘만의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폭력적 배우자로부터 가중된 위험이 존재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가족접견은 이러한 폭력적 배우자를 저지할 수 있는 다른 가족의 중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부접견보다는 폭력적 위험이 감소된다. 또한 배우자와 단둘이 있는 경우보다는 여러 가족들과 함께 있을 경우 현실적으로 행동의 제약을 더 받기 때문에 폭력의 위험은 줄어들게 된다.

라. 행형에 대한 적응과 보상

가족으로부터의 정서적 지지, 온정, 접촉과 격려는 구금생활에서의 긴장과 고통을 일부 완화시킬 수 있다. 반면에 가족구성원으로부터의 제한된 지지나 가족과의 갈등은 교도소의 적응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26)] 따라서 가족접견으로 인하여 가족으로부터 정서적 지지와 격려는 구금생활에서 오는 긴장과 고통을 완화하여 수형생활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가족접견은 교정당국과 교정직원들에게도 유익을 끼친다. 수형자의 교도소 내에서 선행에 대한 보상으로도 가족

25) 조병인 외, 앞의 책, 209-210면.

26) Wright, E.M., Salisbury, E.j., and P.V. Voorhis, (2007), “Predicting the Prison Misconducts of Women Offenders”, Journal of Contemporary Criminal Justice 23(4). p.317.

접견을 시행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수형자가 교도소 규율을 잘 지켜서 수형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게 된다. 2004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실태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수형자들이 가족만남의 집이 자신들의 가족관계의 유지와 교도소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였고, 가족만남의 집 체험 이후 교도소 생활의 안정여부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66명, 82.5%)이 전과 비슷하다는 대답(9명, 11.3%)과 부정적인 대답(2명, 2.5%)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족만남의 집 이용자격을 얻기 위해 교도소 규정을 잘 지킬 의사고 있다고 밝혔다.[27)]

마. 재범예방

가족접견은 수형자가 교도소 생활에 순응하고 적응하려는 동기를 자극하는데 수형자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보상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가족접견은 재범률을 낮춘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그들의 가족과 상호교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족접견의 기회를 부여하여 가족과의 유대를 유지 혹은 강화하거나, 사회에 진출했을 때 성공적으로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실제 캘리포니아 교정국에서 출소한 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감생활 중에 가족과의 접견을 하지 않은 수형자보다 접견을 통해 많이 접촉한 수형자가 최대 6배 정도 재범률이 낮다고 한다.[28)] 가족접견의 결과 가석방의 성공이 높고, 석방 후에 가족과의 적응이 좋게 나타나고 있다.[29)]

2. 문제점– 현행 '가족만남의 집'을 중심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가족접견제도인 가족만남의 집과 가족만남의 날 행사가 있는데 가족만남의 날 행사는 설, 중추절 등의 명절날 많은 인원들이 참여할 수 있고 법정가족 이외의 사람도 참여할 수 있는 등 장점이 있으나 가족만남의 집

27) 조병인 외, 앞의 책, 210-217면.

28) Charles Sullivan, "Private Family Visits Are A Matter of Logic", Corrections Today. 2003, p. 18.

29) Howser, J. F., MacDonald, D., Maintain Family Ties, Correction Today, 1982, pp. 26-28.

과 같은 깊은 가족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깊은 가족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가족만남의 집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가. 빈약한 실시율

UN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 제37조에서는 “피구금자는 필요한 감독하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 가족 또는 믿을 만한 친구와 접견 또는 통신에 의하여 교통하는 것이 허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06년 개정된 유럽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제43조에서 외부와의 접촉에서 “피구금자는 그 처우, 보안 및 시설의 적정한 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한 및 감시하에 가능한 한 자주 모든 개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와 통신하고 그들로부터 방문을 허용되어야 한다. 외부와의 접촉을 장려하기 위하여 처우 목적과 양립하는 석방전 귀휴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도 그 결정문에서 “수형자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지만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기본권의 하나로 박탈되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30] 그렇다면 접견교통권의 한 종류인 가족접견권도 헌법상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권리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가족만남의 집의 이용현황을 보면, 가족접견권이 수형자에게 보장된 적극적인 권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베푸는 은혜적인 조치로서 발생하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처럼 보여진다. 즉 2010년 동안 평균 교정시설에 수용된 평균인원이 4만5천여명이라고 할 때 2010년 한 해 동안 1,223명이 이용했다는 것은 전체 수용인원대비 가족접견 이용인원은 3%에도 못 미치는 인원이다. 또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적으로 가족만남의 집을 이용하도록 허가된 수형자는 교정시설에 수용된 인원의 1~3%에 불과하다.

30) 그 이유는 기본적인 생활관계가 인신의 구속으로 완전히 단절되어 정신적으로 황폐화가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형자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함부로 박탈하거나 침해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9. 09.24.선고 2007헌마738.

연도별 수용인원[31)]

(단위 : 명)

구분	수용정원	연도말 수용인원	일일평균 수용인원	가족만남의 집 연도별이용인원	이용비율(%)[32)]
2006	47,390	45,651	46,721	337	0.72
2007	43,100	45,647	46,313	453	0.98
2008	43,100	47,966	46,684	782	1.67
2009	45,930	48,288	49,467	795	1.61
2010	45,930	45,681	47,471	1,223	2.58

나. 비용부담의 문제

부부접견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족접견에도 별도의 시설과 추가적인 계호인력에 대한 비용이 문제가 된다. 여성수형자의 임신과 그에 따른 의료비용 및 출산한 아기의 양육비용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비용의 문제는 가족접견이 적게 실시되는 원인이 된다. 부부접견의 경우 수형자와 배우자 2인인데 반해 수형자와 5인 이내의 가족들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용경비가 증가하였다. 주로 냉난방 연료비와 시설유지비용이 소요된다. 현재처럼 법무부는 자체예산과 복권기금 등을 활용하고 있지만 확대할 경우 비용부담의 문제가 적지 않다. 가족만남의 집이 있는 교정시설 한 곳에서 평균적으로 1개월에 1~2명의 수형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과거 집에서 교도소까지의 거리 및 소요되는 경비 등이 가족방문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다.[33)] 가족만남의 집이 설치된 교정시설이 전국에 몇 군데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전국 40개의 교정시설에 41개의 가족만남의 집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과거처럼 수형자와 가족접견을 하기 위하여 가족만남의 집이 있는 먼 교정기관을 찾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아직도 수형자 가족의 비용부담의 문제가 있다. 수형자들의 가족들이 상당수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일상적인 생계 자체가 어

31) 교정본부 홈페이지, http://www.corrections.go.kr/HP/TCOR/cor_04/cor_0404/cor_404010.jsp; 법무부,「2011 법무연감」, 2011, 460면.

32) 연 이용인원/평균수용인원 × 100

33) 전영실 · 신영희, “수용자 가족방문 실태 및 그 효과”, 교정연구 제45호, 2009, 289-292면.

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 법정 가족이 없는 수형자에 대한 차별

‘가족만남의 날 행사’에는 가족이 없는 수형자를 위해 가족에 준하는 사람도 그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있다(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법무부예규 제946호). 그러나 ‘가족만남의 집’ 이용대상자는 가족만남이 날 행사 이용대상자와 달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가족’인 수용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및 수용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수용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수형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만 허용하고 있고 법정가족 이외에는 참여할 수 없다(동지침 제13조). 이처럼 가족만남의 집이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등본에 기초한 법정 가족관계에 국한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면 가족이 없는 수형자는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차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족접견제도가 가족간에 형성된 유대감이 수형자의 수형생활의 적응과 사회로의 복귀에 유익하기 때문에 행하여지는 제도라면, 법정 가족이 아닌 사실혼 배우자, 동거자 등 사실상의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수형자에게 수형생활의 적응과 사회로의 복귀에 유익하게 할 수 있다면 가족만남의 집 이용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 짧은 이용시간의 문제점

가족만남의 집은 1박2일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교화상 필요한 경우 이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교화상 특히 필요한 경우 1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14조 1항, 법무부예규 제946호). 하지만 가족접견의 주요 대상으로 10년 이상의 장기수형자들이 많은데 이들에게 1박2일은 너무 짧은 기간이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간에 충분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이 제도의 창설 취지이므로 2박3일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있다.[34] 미국의 경우 48시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35]과 가족접견

34) 허주욱, 앞의 책, 797-798면; 박영규, 앞의 글, 100면.

35) Private family visits are 48 hours or more in length and provide inmates and their families the opportunity to interact in a secure homelike setting. Although this building may be behind

제도가 수형자와 가족들간의 관계회복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현행과 같이 1박2일 원칙과 1일 연장과 같은 획일적인 제도 운영보다는 가족간의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이용시간의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하다.

마. 폭력의 위험

부부접견이 배우자 간의 단 둘만의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폭력적 배우자로부터 가중된 위험이 존재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가족접견은 이러한 폭력적 배우자를 저지할 수 있는 가족의 중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부접견보다는 폭력적 위험이 감소된다. 그래서 계호직원이 배치되어 가족의 동태를 감시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가족만남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계호인원의 부족현상을 타개하기 위하여 계호직원을 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있다.[36] 그러나 폭력의 위험이 감소될 뿐이지 완전히 해소될 수는 없다. 만일의 사태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계호인력의 배치는 교정시설의 특성상 필수적인 것이다. 가족만남의 집 내부를 감시할 수 있는 CCTV는 수형자와 그 가족들의 프라이버시와 인권보장을 위해 설치하지 않고 있지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직통전화는 설치되어있다. 그러므로 가족만남의 집 내부나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감시는 불필요하겠지만 가족만남의 집 내부와 연결된 직통전화 옆에서 대기하는 계호인력은 최소한 필요할 것이다. 가족만남의 집이 설치된 기관의 장은 가족만남의 집 이용시 자체 계호계획을 수립 ·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수용자 사회복귀지원등에 관한 지침 제18조 1항).

바. 성병 및 전염병 감염의 위험

부부접견제도를 확대한 가족접견제도 역시 부부접견과 같은 문제점들, 성병 등의 전염병에 감염될 우려가 있으며, 임신과 출산의 문제점이 있다. 특히 같은 공간

---

the prison fence, it is totally separate from the rest of the inmate population. Charles. Sullivan, “Private Family Visits Are A Matter of Logic”, Corrections Today; Jun2003, Vol. 65 Issue 3, p18.

36) 허주욱, 앞의 책, 797면.

에서 숙식을 같이 하다보면 가져온 음식물 때문에 전염병에 노출될 수도 있다.

마. 금지물품의 반입

가족접견으로 반입이 금지된 물건들 즉, 마약, 술, 담배, 흉기 등을 실어 나를 접근방법이 부부접견의 경우보다 더 증가된다. 가족들의 몸이나 짐 등을 통해서 금지물품을 반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접견은 안전상황이 일반적인 접견보다는 느슨해지는 것이 필연적이므로 반입금지된 물건들이 교도소로 유입되는 것이 증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접견하기 위하여 방문한 가족들에게 신체 수색을 하게 되면 인권침해의 문제가 있다. 가족접견에 참가한 가족들에 대한 몸 검사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다고 한다.[37]

5. 소결- 가족접견제도의 개별화 필요성

배우자에서 가족으로 대상을 확대하게 되어 미혼자에 대한 차별문제를 시정할 수 있고, 폭력의 위험을 감소시키며, 형행에 대한 보상과 재범을 예방할 수 있는 등 가족접견제도가 가지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다. 그러나 부부접견제도의 이용비율이 전체 수용인원의 1~3%에 불과하다는 점, 가족이 없는 독신자 등에 대한 차별의 문제와 1박2일의 짧은 이용시간의 문제점들이 있다. 또한 부부접견제도를 확대한 가족접견제도 역시 부부접견과 같은 문제점들, 즉 가족접견 시에 가정폭력범죄자로부터 폭력을 당할 위험이 존재하고, 성병 등의 전염병에 감염될 우려가 있으며, 임신과 출산의 문제점, 가족접견으로 인한 비용증가와 반입금지물품의 유입의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수형자의 개개인의 성향에 따른 개별화된 가족접견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즉 수형자의 특성과 가족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과 일률적인 가족접견의 시행은 오히려 가족관계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폭력성향이 있는 수형자나 성병 등 질병보균자 그리고 반입금지물품을 유입시킬만한 수형

37) 조병인 외, 앞의 책, 228면.

자를 개별적으로 선별하지 않고 지금처럼 가족접견을 시행한다면 여전히 교정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아무리 가족접견이 수형자의 수형생활적응과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에 유용하더라도 수형자의 개별적인 필요에 맞지 않는다면 고비용 저효율의 제도가 될 것이며 그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가족접견의 개별화가 이루어져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또한 예상치 못한 가족접견의 악영향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IV. 가족접견제도의 개별화

1. 가족접견제도의 개별화

19세기 말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실증적이고도 과학적인 연구가 현저해짐에 따라 행형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주어 행형사상에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되었다. 형벌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인 개인에 대하여 과하는 것이라 하여 범죄인의 반사회성에 따른 과학적 '분류'가 중요하고 또 그 분류에 대응하는 '처우'의 방법도 달리한다는 이른바 '형벌의 개별화'를 중시하게 되었다.[38] 다시 형벌제도를 형사정책적으로 전개시켜 사회방위의 방법으로서 범죄인의 범죄성을 개선교육하는 작용을 강조하게 되었고, 이것은 "형벌은 범죄행위보다 범죄자에게 적합하여야 한다"는 소위 '의료모델(또는 개선모델)'로써 범죄자의 처우는 환자의 치료와 같아야 한다는 '처우의 개별화'를 의미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처우의 개별화'의 원칙은 유엔처우규칙 제66조와 유럽행형규칙에 명시되어 있는데, 특히 유럽행형규칙은 이 원칙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개별적 처우계획(individual treatment and training programmes)을 작성하여야 할 것을 명기하고 있다(동규칙 제66조 C호).[39] 우리나라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38)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11, 49면.
39) 김용우 · 최재천, 「형사정책」, 박영사, 2006, 302면.

법률 제56조에서도 “수형자의 개별적 특성에 알맞은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의 처우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라고 하여 처우의 개별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현대 행형은 수형자의 각기 다른 성장환경과 개성 등으로 인하여 범죄적 결함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교화개선적 처우도 적극적으로 각 수형자에게 알맞은 개별적 처우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접견제도도 수형자의 개인적 특성 특히 가족관계에 따라 개별적인 가족접견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가족접견제도를 ‘가족접견제도의 개별화’라고 한다.

2. 수형자의 가족별 특성에 따른 접견: 수형자의 성별, 배우자 및 자녀, 다른 가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2010.08.01. 법무부예규 946호)에 따르면, 수용생활이 다른 수형자에 모범이 되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회복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① 어린 자녀 또는 연로한 부모가 있거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심적 안정이 필요한 자

② 소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으로써 가족으로부터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자

③ 학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성적이 우수하며 격려가 필요한 자

④ 교도작업 능률향상, 교정사고 방지, 그 밖의 선행 등으로 수형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

⑤ 소장이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리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9조 제1항은 “소장은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해 가족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가족만남의 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도주우려가 없거나, 모범수형자에 대해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소장은 일반 수형자라

하더라도 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해서도 가족접견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재량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규칙 3항).

과거 대상자를 형기가 5년 이상(무기수는 7년)을 경과하고, 누진계급이 2급 이상으로 기능자격 자격취득자, 검정고시, 합격자 등 수용생활에서 모범이 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요건이 너무 엄격하게 되어 있어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위 법률과 지침에 반영되었다.[40)]

하지만 현행법은 수형자의 성향과 수형자와 가족들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 현재처럼 수형자의 개인적 성향과 수형자와 가족간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가족접견의 대상자를 선정한다면, 수형자와 가족과의 접촉이 오히려 고통을 수반하고, 부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41)] 특히 가족간의 문제가 있었던 수형자들에게는 이러한 가족접견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즉 입소 전에 이미 가족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입소 후에 접견을 하더라도 악화된 관계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가족과의 접견이 수형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42)] 또한 수형자들이 가족과의 관계가 좋지 않게 되었거나, 남편이 공격적 성향을 가진 수형자의 경우 접견이 수형자의 안정에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43)]

따라서 수형자의 성별, 배우자와 자녀, 그 외의 다른 가족들에게는 접견의 종류, 방법 등이 각각 다르게 개별적인 접근을 하여야 한다. 수형자의 성별과 접견대상 가족이 누구이냐에 따라 효과면에서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 대상자의 관계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

40) 이정원, “중간처우제도의 필요성과 효율성 증진 방안”, 중앙법학 제7집, 제3호, 중앙법학회, 2005. 133면; 천정환, 「인권교정복지론」, 푸른북, 2006, 135-136면

41) Casy, K., The Effect of Visitation on the Disciplinary Adjustment of Incarcerated Femals,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1993. pp.57-60.

42) 특히 남편이 수감생활을 하고 있고, 아내가 자식을 부양한다고 가정하면, 남편을 원망할 것이고 이로 인해 남편과의 접촉이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43) Wilkinson, Reginald A. “The Cost of Conjugal Visitation Outweighs the Benefits”, Corrections Today, Vol. 65 Issue 3, 2003, pp.19-21.

가. 수형자의 성별

수형자의 성별에 따른 가족접견의 효과면에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개별적 고려도 필요하다. 즉, 가족방문의 효과가 남자수형자의 경우에는 여성수형자보다 상대적으로 가족관계의 유지와 가석방의 성공적인 유지에 관련성이 있었지만,[44] 여성수형자의 경우에는 교도소 내의 적응에 더 영향을 미쳤다.[45] 어린 자녀와의 접견이 남성수형자의 수형생활 적응보다 여성수형자의 수형생활 적응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46] 가족방문과 출소 후 가족관계의 전망과 관련하여 남녀 수형자 모두 접견빈도가 높을수록 출소 후 가족관계 전망이 긍정적이었다. 특히 남성수형자의 경우 미성년자녀 접견유무는 출소 후 가족관계 전망 및 가족지원정도에 대한 인식과 관련되었다. 즉 가족접견이 여성보다 남성 수형자의 출소 후 태도에 상대적으로 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가족접견이 여성수형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수형생활 적응에 더 도움이 되고, 남성수형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출소 후의 가족관계에 더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수형자의 성별에 따라 가족접견의 효과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수형자의 성별에 따라 가족접견의 지원방향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나. 배우자 및 자녀들 그리고 다른 가족

수형자와 가족간의 관계에서 특히 수형자와 그의 자녀들간의 관계는 직접접견을 함으로써 증진될 수 있는데 반해, 수형자와 그 배우자간의 관계에서는 직접접견이 수감되기 전에 배우자와의 관계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도 있고 부정적인 효과를 줄 수도 있다.[47] 따라서 수형자와 그 자녀들간의 접견은 확대하는 것이 좋

---

44) Schafer, N., E., (1994), “Explorary the link Between Visits and Parole Success: A Survey of Prison Visitors”,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38(1).

45) 김두섭・전영실,「여자수형자의 수형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46) 그 이유는 어머니가 다른 성인에 대해서는 가지지 않는 자녀에 대한 법적, 도덕적, 정서적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Casey-Acevedo, k., Bakken T., A. Karle, (2004), “Children Visiting Mothers in Prison: The Effects on Mothers' Behaviour and Disciplinary Adjustment”, The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Criminology 37(1):

47) 수형자의 입소전에 가족관계의 질이 수형자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Nancy

겠지만, 수형자와 그 배우자간의 접견은 무조건 확대하는 것보다는 입소전에 부부관계의 좋고 나쁨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는 수형자와 직접접견의 형식이 수형자가 석방 후에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반해, 배우자와 자녀 이외의 가족들은 직접접견보다는 전화나 이메일이 더 관계를 증진하는데 효과적이다.[48] 자녀와의 직접적인 접견은 물론이고 이메일이나 전화통화는 석방후의 자녀들과 유대감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49] 배우자와 자녀 이외의 다른 가족들 중에 수형자의 어머니, 여동생 그리고 숙모와의 관계에서는 직접접견의 종류에 상관없이 매우 안정적이다. 그러므로 이들과의 접견은 보다 확대하더라도 좋을 것이다.[50] 따라서 가족접견의 방법도 수형자와 어떤 가족이냐에 따라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

3. 구체적 접견금지규정의 신설

부부접견이나 가족접견은 일률적으로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적용하는 것보다는 수형자와 그 배우자 및 가족의 개개의 성향에 따라 개별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수형자와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간의 관계를 살펴서 가족접견이 가족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면 가족접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에서는 접견금지사유들 즉,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등과 같이 일반적인 접견금지 사유만을 두고 있다.[51] 이에 대하여 가족접견은 혼인과 가족생활에 따른

G. La Vigne, Rebecca L. Naser, Lisa E. Brooks, Jennifer L. Castro, (2005), p 323, 331.

48) Nancy G. La Vigne, Rebecca L. Naser, Lisa E. Brooks, Jennifer L. Castro, (2005), p 331-332.

49) Nancy G. La Vigne, Rebecca L. Naser, Lisa E. Brooks, Jennifer L. Castro, (2005), p 328.

50) Nancy G. La Vigne, Rebecca L. Naser, Lisa E. Brooks, Jennifer L. Castro, (2005), p 328.

5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1항: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예외사유로서 접견을 금지할 수 없다는 견해,[52] 접견금지에 해당하는 예외사유의 구체화를 통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견해,[53] 수용자의 접견 예외규정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법령에 저촉되거나 교정・교화에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견해[54] 등이 있다. 두 번째 견해와 같이 구체적인 접견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처우의 개별화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동법 제41조 1항의 1・2호의 사유는 해석상 당연히 금지되는 사유라고 할 수 있지만, 3・4호의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와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의 표현은 극히 포괄적인 것으로 보다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55] 예를 들면, 구체적인 접견금지 대상자로는 가정폭력범죄자, 치료감호대상자, 성병감염자 및 전염성질병자 등을 설시할 수 있을 것이다.

가. 가정폭력범죄자

가정폭력범죄의 경력이 있는 수형자와 또는 가정폭력범죄의 경력이 있는 가족도 가족접견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가족접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는 임의적 사유로서 대상자 선정시에 판단의 여지를 두어 가족관계를 악화시킬 우려나 가정폭력의 우려가 없다면 접견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나. 치료감호대상자

치료감호법 제2조에서는 치료감호대상자로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벌할 수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減輕)되는 심신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

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4.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52) 양화식, "개정형법(제7차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교정연구 제11호, 2000, 6면.
53) 장중식, "행형법 전부개정 법률안의 수용과 관련한 보완적 고찰", 교정연구 제33호, 2006, 69면.
54) 조준현, "행형의 이념・목적과 행형법 개정방향", 교정연구 제29호, 2005, 22면.
55) 박영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의 수형자의 권리", 교정연구 제45호, 2009, 141면.

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 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害毒)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食飮) · 섭취 · 흡입 · 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에게 치료와 성생활은 별개이므로 피치료감호자의 건강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이상 성생활이 보장되어야 주장이 있으나,[56] 가족접견은 교정처우의 일종으로서 행하여지는 것이고 이들에게는 치료가 먼저 행하여져야 하는 것이므로 치료감호대상자들은 가족접견의 대상에서 필요적으로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다. 성병감염자 및 전염성 질병자

앞에서 부부접견제도의 비판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병감염자의 가족접견은 교도소 안과 밖으로 성병이 전염될 수 있는 위험이 높다. 전염성 질병자도 마찬가지이다. 완치될 때까지 가족만남의 집 이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도 임의적 사유로 한 것은 다양한 성병이나 전염성 질환자라도 전염되지 않는 특수한 상황이 존재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만남의 날 행사와 같은 가족접견은 허용가능성이 가족만남의 집 보다 높을 수 있다.

4. 개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위와 같이 접견금지규정에 의하여 선별된 가족들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가족접견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수형자의 가족관계 강화를 위한 교정 프로그램들은 각각의 장점을 가지고 나름대로 수형자의 가족관계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만남의 기회나 접촉의 기회만을 제공할 뿐

56) 천정환, 앞의 책, 137-138면.

적극적으로 가족들을 화합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는 미흡하며 특히 자녀와의 유대관계를 강화시키는데 중점을 둔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수형자와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유지는 가족이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한 이는 수형자를 지지하고 지원할 수 있는 힘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정교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57]

접견금지규정에 의하여 가족만남의 집과 같은 가족접견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만남의 날 행사나 화상접견을 통해서 가족접견의 효과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건강, 경제사정 등의 이유로 접견을 올 수 없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화상접견이나 수형자의 귀휴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빈곤층 가족에 대해서는 접견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58]

지금까지는 수형자와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소홀해 왔다. 그 이유는 수형자에 대한 처벌에만 중점을 두다보니 수형자의 처우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그다지 발전하지 못하였고, 가족주의(家族主義)가 강하여 가족의 문제는 일차적으로 가족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수형자의 가족문제 역시 가족 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족은 수형자가 수형생활 동안 인내할 수 있는 지지대가 되고 수형자를 사회에 복귀시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공동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한 거처가 된다. 가족으로부터 강한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범죄자를 감옥에서 사회로의 성공적인 변화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형자의 교정교화에 있어서 가족의 존재가 가지는 긍정적인 영향을 생각해 볼 때 가족의 역할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따라서 위기에 처한 수형자의 가족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59]

---

57) 박영숙, 앞의 글, 1-2면.

58) 전영실・신연희・김영식,「수형자 가족관계 건강성 실태조사 및 향상방안연구」, 2007년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법무부・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177면.

59) 박영숙, 앞의 글, 1-2면.

5. 사실혼 배우자 등에 확대

부부접견제도가 미혼의 수형자 등에게 차별이 된 것처럼 가족접견제도가 가족이 없는 수형자에게 또 다른 차별의 문제를 야기한다. 가족이 없어 가족접견을 하지 못한 수형자는 상대적 박탈감을 더 느낄 수 있다.[60] 이러한 상대적 발탈감은 수형자들로 하여금 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61] 따라서 가족이 없는 수형자에게도 가족과 같은 의미를 줄 수 있는 사람들과의 접견이 가족접견의 형태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결혼을 선택사항으로 생각하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접견제도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사회복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라면 가족접견의 가족에는 법정가족뿐만 아니라 법정 가족 이상의 의미를 주는 사실혼 배우자, 동거자 등에게도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 방법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 함부르그 행형법 제27조 3항에서는 장시간 접견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시설의 장은 배우자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자와의 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러한 접견이 인정된다. 겔드론(Geldern) 행형시설에서는 한달에 한번 가족, 배우자, 자녀, 애인 등과 별도의 장소에서 장시간 접견을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접견이 수용자의 처우 또는 재사회화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접견이 허용되고 있으며, 결혼한 수형자에게 다른 수형자보다 접견시간 허용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법도 있다.[62]

---

60) 외부교통 유무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비교 결과 외부와의 교통을 하지 않고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상대적 박탈감을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성진 · 노용준 · 신경우, 「수형자의 법질서 확립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117면.

61) 상대적 박탈감은 수형자들로 하여금 폭력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다. 실제 뉴욕주에서는 외부교통을 시행한 후 폭력이 줄어들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Bowker, Lee. H., Corrections: The Science and the Art. Macmillan Publishing Co. Inc. New York, 1982. pp.26-30.

62) Meyer, H., Anmerkungen zum Langzeitbesuch Persönliche Erfahrungen im Vergleich zum Normalbesuch, in: ZfStrVo 1991, S. 220ff..

V. 결론에 갈음하여

가족접견제도는 배우자와 자녀 등과 같이 인생에서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유대를 강화시킬 수 있고 이들과의 관계를 유지하여 가족관계를 안정시킬 수 있어 수형자가 사회복귀를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그러나 보안상의 위험, 비용증대 그리고 가족접견장소를 통한 마약, 흉기 등과 같은 반입금지물품의 유입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특히 가족간의 문제가 있었던 수형자들에게는 이러한 접견제도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수형자가 입소전에 배우자와 좋지 못한 관계였을 경우에는 교도소 내에서의 접촉이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처럼 대상자를 구체적인 가족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선정하는 것은 현대교정이 요구하는 개별처우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수형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개별화된 가족접견제도를 모색하여야 한다. 가족접견제도를 개별화하기 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형자와 그의 가족, 친밀한 배우자, 친밀하지 않은 배우자, 자녀들, 그리고 그 외의 다른 가족들에게는 접견의 종류, 방법 등이 각각 다르게 개별적인 접근을 하여야 한다. 수형자,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이 받는 악영향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형자의 성별에 따른 가족접견제도를 검토하여야 한다. 수형자가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에 따라 자녀들과의 가족접견에서 오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가족접견의 대상자로서 치료감호대상자, 과거 가정폭력범죄자, 성병 등 전염성 질환자를 제외 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족접견의 장점을 살려 법정 가족은 아니지만 수형자에게 법정가족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 있는 사실혼 배우자나 동거자에게도 가족접견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김두섭 · 전영실, 「여자수형자의 수형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김용우 · 최재천, 「형사정책」, 박영사, 2006.

박영규, “수형자의 외부교통권”, 교정연구 제28호, 한국교정학회, 2005.

박영숙, “수형자의 가족관계강화를 위한 교정복지 방안”, 인권복지연구 제2호, 2007.

양화식, “개정형법(제7차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교정연구 제11호, 2000.

연성진 · 노용준 · 신경우, 「수형자의 법질서 확립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이윤호, 「교정학」, 박영사, 2007.

이정원, “중간처우제도의 필요성과 효율성 증진 방안”, 중앙법학 제7집, 제3호, 중앙법학회, 2005.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07. 2011.

장중식, “행형법 전부개정 법률안의 수용과 관련한 보완적 고찰”, 교정연구 제33호, 2006.

전영실 · 신연희, “수용자 가족방문 실태 및 그 효과-성별비교를 중심으로”, 교정연구(제45호), 2009.

전영실 · 신연희 · 김영식, 「수형자 가족관계 건강성 실태조사 및 향상방안연구」, 2007년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법무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정진수 · 박양빈 · 이윤호 · 임재표 · 김종정 · 홍남식 · 이종택, 「21세기 교정비전과 처우의 선진화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03-16). 2003.

조병인 · 원혜욱 · 민수홍 · 이경재, 「수용자 외부교통 확대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조준현, “행형의 이념 · 목적과 행형법 개정방향”, 교정연구 제29호, 2005.

천정환,「인권교정복지론」, 푸른북, 2006.
허주욱,「교정보호학」, 박영사, 2010.

2. 외국문헌

Casey-Acevedo, k., Bakken T., A. Karle, (2004), “Children Visiting Mothers in Prison: The Effects on Mothers' Behaviour and Disciplinary Adjustment”, The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Criminology 37(1)

Christopher Hensly, Mary Koscheski, and Richard Tewksbury, “Does participation in conjugal visitations reduce prison violence in Mississipi? An Exploratory Study”, Criminal Justice Review Vol. 27, No.1, 2002.

Coyle, Andrew, “A human right approach to prison management”, International Center for Prison, London King's College, 2002.

Hensly,C., Rutland, S., & Gray-Ray, P,, “The effects of conjugal visits on Mississipi inmates”, Corrections Compendium, 25(4), 2000.

Hensly,C., Rutland, S., Gray-Ray, P,,& Durant, L,, “Conjugal Visitations on Mississipi”, The Researcher, 16(4), 2000.

Hopper, C., Sex in Prison, Baton Rouge; Louisians State University Press, 1969

Koepsel, K., Besonder Probleme verheirateter Strafgefangener, in: ZfSTroVo 1989.

Maruschak, Laura M., December 2009, Bulletin: HIV in Prisons, 2007-2008. Washington, D.C.,: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Retrieved from: https://www.aca.org/government/population.asp.

Nancy G. La Vigne, Rebecca L. Naser, Lisa E. Brooks, Jennifer L. Castro, (2005). “Examining the Effect of Incarceration and In-Prison Family Contact on Prisoners' Family Relationships”, Journal of Contemporary Criminal Justice 21(4).

Schafer, N., E., (1994), “Explorary the link Between Visits and Parole Success: A Survey of Prison Visitors”,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38(1).

Sullivan, Charles, “Private Family Visits Are A Matter of Logic”, Corrections Today. 2003.

Vigne N.G., Naser, R.L., Brooks, L.E., and J.L. Castro,(2005). “Examining the Effect of Incarceration and In-Prison Family Contact on Prisoners' Family Relationships”, Journal of Contemporary Criminal Justice 21(4).

Wilkinson, Reginald A. “The Cost of Conjugal Visitation Outweighs the Benefits”, Corrections Today; Jun2003, Vol. 65 Issue 3.

Wright, E.M., Salisbury, E.j., and P.V. Voorhis, (2007), “Predicting the Prison Misconducts of Women Offenders”, Journal of Contemporary Criminal Justice 23(4).

藤本哲也, 現代アメリカ犯罪學辭典, 勁草書房, 1991

The Individualization of Family Visits System

Kim Byung-Soo*

Family visits system is able to strengthen ties with people such as spouses and children that have meaning in inmates' life. Stabilizing relationships with family, Family visits can play an important role to return the inmates to society. There are many positive aspects of this system. However, its side effects can not be ignored. In other words, it may result adverse effects : a security risk, cost increases and the influx of prohibited goods such as drugs and offensive weapons over the family visits place. Rather, family visits can give bad effects to prisoners especially those who have problems between family. To prisoners who was a bad relationship with his spouse before the admission, meeting in prison can affect negatively. The way to select subjects as prison without taking into account of family relationship, as now, does not meet the individual treatment that modern correction needs. Therefor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inmate, individualized family visits system should be sought. To individualize family visits,

First, inmate, intimate partner, not intimate spouse, children and other family members should be approached in different types and methods of family visits. Because we should consider adverse effects that inmates, spouses, and children receive. And the family visits based on gender shall be reviewed. Depending on whether Inmates are father or mother, the impacts from family visits are different. As the subject of family visits, the subject in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the perpetrators of family violence in the past and contagious illness including venereal disease should be excluded. Finally, taking advantage of family

* Full-time Researcher, Institute of Law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Ph. D. of Law

visits, person living with or common-law partner who is more meaningful than legal family be included in the subject of family visits.

❖ Key words : family visits, family visits system, conjugal visit system, the individualization of family visits, individual treatment,

투고일 : 6월 8일 / 심사(수정)일 : 6월 28일 / 게재확정일 : 7월 6일